

〈별표96〉 2대질환(요실금, 치핵) 분류표

- ① 약관에 규정하는 2대질환(요실금, 치핵)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(통계청 고시 제2020-175호, 2021.1.1. 시행)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, 이후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2대질환(요실금, 치핵)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.

구분	분류항목	분류번호
요실금 질환	1. 상세불명의 요실금 2. 스트레스성요실금 3. 기타 명시된 요실금	R32 N39.3 N39.4
치핵, 치열 및 치루	1. 항문 및 직장부의 열창 및 누공 2. 항문 및 직장부의 농양 3. 항문 및 직장의 기타 질환 4.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혈전증 (출산 및 산후기 합병(O87.2) 제외) (임신 합병(O22.4) 제외)	K60 K61 K62 K64

주)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2대질환(요실금, 치핵)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.

-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, 이후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.
- ③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,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.
-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.